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1433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의자 : 박홍근 · 서영석 · 전용기
채현일 · 정일영 · 박용갑
한정애 · 김예지 · 손솔
이학영 · 이주희 · 김윤
양부남 · 최혁진 의원
(14인)

주 문

최근 5만여 국민이 국회에 청원한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과거와 달라진 대한민국 국민의 동물권과 생명존중의 보편적 가치가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현행 법령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의 일부 조항은 소싸움 경기를 동물 학대의 예외로 규정하여,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해를 유발하고, 심지어 비인도적이고 폭력적인 자극행위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소싸움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소에게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일부 소는 경기 후 안락사되거나 방치되

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소싸움 지원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23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도군의 경우 영업손실액 66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동물의 고통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동물권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생명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비윤리적인 폭력을 전통적 관행으로 유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혁하며, 지속가능한 공존의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제적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소싸움 관련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하며, 전통 문화 육성 예산을 동물복지 및 비폭력적 지역문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소싸움 과정에서 부상·방치된 소들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조·치료·재활·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동물의 감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50,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소싸움 전면 금지 청원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며, 소싸움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관행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함. 이러한 변화는 생명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

소싸움은 반복적 충돌과 강제적 대치를 전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소는 심각한 통증, 스트레스, 외상, 공포를 경험함. 이는 「동물보호법」의 학대·고통 유발 금지 취지와 상충할 소지가 있으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이를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법체계 내 모순을 초래하고 있음.

과학적 연구는 투우·격투 상황에 동원된 소들이 심각한 생리·대

사 이상과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고통과 공포를 경험한다는 점을 보여줌(Mota-Rojas et al., Animals, 2021 등). 국제적으로도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 논의, 영국의 Animal Welfare Act 2006의 ‘불필요한 고통 (unnecessary suffering)’ 금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 위생규약기준 (7.1장)의 “pain, fear and distress” 회피 기준 등은 오락·전통을 이유로 한 동물의 고통 유발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음. 국내 법체계 역시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되어야 함. 국제 기준과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 정비되어야 함.

아울러 공공재정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남. 청도 소싸움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66억원의 영업손실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었고, 다수의 지자체가 소싸움 대회 운영·홍보·시설 유지에 예산을 사용함. 이러한 구조는 재정 건전성 및 공공성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오히려 관련 예산을 생태·교육·문화 기반의 대안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더 큰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

소싸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동물의 방치 및 사후 처리 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훈련·경기·운송·계류 단계 전반에서 구조·응급치료·재활·장기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추가 고통과 방치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함. 이는 이

미 현행 「동물보호법」 제34조가 예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질화하는 조치임.

또한 소싸움 금지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와 사육 농가의 단계적 전환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며, 생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소싸움 전면 금지는 동물복지의 기본 기준을 확립하고, 법적·행정적 모순을 해소하며, 공공재정의 효율성과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중단과 예산 전환, 부상 동물 보호체계 확립, 종사자 전환 정책 마련을 통해 폭력적 오락 관행을 종식시키고 생명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출함.